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7. 10.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경우 구매자가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 잔량을 반품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으나,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스티커에 대해서는 배출스티커를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에 수수료 환불 규정이 없어 군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배출스티커 수수료 환불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현행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생활폐기물 수수료 체계 개선

-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스티커를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 수수료 환불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4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예산관련 사항 : 해당없음
다.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라.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 - 768호(2007. 5. 16)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배출자 사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할 경우 읍·면장은 당해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내지③ <생 략> <신 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내지③ <현행과 같음> ④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후 배출자 사정에 의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변경)할 경우 읍·면장은 당해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의 권고에 따른 것임.